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가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함(안 제11조).
-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「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함(안 제36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-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와 타인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함(안 제54조, 제54조의4 및 제54조의5 등).

II. 검토의견

○ 2026년 2월 27일 공포되어 8월 28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02호 농지법¹⁾과 개정안은 각각 제15조(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) 및 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)를 개정하고 있음.

○ 그런데, 안 제15조 및 제28조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일이 불확실한 상황에서,

만약 동 개정안이 8월 28일 이전에 시행될 경우 법률 제21402호 농지법의 개정문 및 시행일을 추가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등 법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개정 소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○ 따라서 안 부칙 제1조(시행일) 본문에 따른 시행일을 ‘공포 후

1) 법률 제21402호 농지법 신구조문대비표 중 일부

현 행	법률 제21402호 농지법
제15조(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) <u>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</u> , 한국농어촌공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“농지이용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	제15조(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)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,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, 한국농어촌공사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(이하 “농지이용증진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다.
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 <u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</u>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.	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 <u>시·도지사</u> 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.

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’에서 ‘2026년 8월 28일부터’로 수정하고,
안 제28조의 개정내용은 법률 제21402호 농지법의 개정내용과
동일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.

-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.

현행	제21402호 농지법	개정안	개정안 수정의견
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.	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시·도지사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	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(제21402호 농지법과 같음)	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(제21402호 농지법과 같으므로 개정하지 않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	② (현행과 같음)

현 행	제21402호 농지법	개 정 안	개 정 안 수 정 의 견
	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 포 후 3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 터 시행한다. 1. 제51조의2, 제54조, 제 54조의4, 제54조의5, 제54조의6 및 제60조 의2의 개정 규정: 공포 한 날 2. 제32조, 제 36조 및 제 47조의 개 정규정: 공 포 후 6개 월이 경과 한 날 3. 제6조제3 항, 제7조,	부 칙 제1조(시행일) -----202 6년 8월 28 일부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 과 같음) 3. (개정안 과 같음)

현 행	제21402호 농지법	개 정 안	개 정 안 수 정 의 건
		제10조 제1 항제4호의2 · 제4호의 3, 제23조 제1항제1호 · 제7호 및 같은 조 제 3항의 개정 규정: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	

-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